

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 - 6호

2022년 1월 18일자(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-4호)로 입법예고된 「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이 변경되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1월 19일

## 강릉시 의회 의장

###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- 특별휴가에 규정되어 있는 포상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를 통하여 업무 동기부여 및 성과보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포상휴가 일수 확대(안 제15조제3항)
  - (당초) 5일 이내 → (변경) 7일 이내
-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(안 제15조제7항)
  - (당초)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: 10일 → (변경) 15일
  - (당초)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: 20일 → (변경) 25일
  - (당초) 재직기간 30년 이상: 20일 → (변경) 25일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- 주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- 전화: 033-640-4113
- 팩스: 033-640-4070

붙임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5일” 을 “7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“10일” 을 “15일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“20일” 을 각각 “25일” 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7항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5조제7항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.

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공무원법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 
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 
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